

정 관



학교법인 광성학원

학교법인 광성학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 전통을 바탕으로 한 선교적 사명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광성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광성중학교
2. 광성고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8길 20(신수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삭 제)

제12조의8(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2.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기독교 교단의 신도로서 세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② 이 법인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한 자 이어야 한다.

제15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15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 (삭 제)

제15조의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광성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 4인

2. 이사회에서 추천 하는 자 : 3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제1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의3(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의 겸직금지 「사립학교법」 제23조를 따른다.

제17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7조의1(삭제)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의2(상근이사) ① 법인 임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 2명(이사장 포함)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상근이사의 수당 지급방법, 지급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삭 제)

제21조 (삭 제)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삭 제)

제26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27조(수익사업의 종류) (삭제)

제28조(수익사업체의 명칭) (삭제)

제29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삭제)

제30조(관리인) (삭제)<2026.06.01.>

제 5 장 해 산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3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33조의2(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특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3조의3(행동강령)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의4(향응·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편의,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학교법인 또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원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원 및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원 및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볼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원 및 교직원에게 또는 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5(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6(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사장(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33조의7(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사장(또는 학교장)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원 및 교직원에게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8(교육) 이사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33조의9(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에는 임원(감사 등), 소속 학교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3. 그 밖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10(세부사항의 위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 및 정관에 따라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한다.

제33조의11(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학교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단,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는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

④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원의 인사 사항은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⑦ 각급 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6.06.01.>

⑧ 학교장이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06.01.>

제34조의2(임명의 제한) ①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2/3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

②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정수의 2/3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3(기간제 교원) ① 사립학교법(이하 이 정관에서 “법”이라 한다) 제5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학교장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4(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1조의2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제34조의5(삭 제)

제34조의6(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 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7(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각급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의2를 따른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5조 (삭 제)

제35조의2(휴직의 사유) 교원의 휴직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9조를 따른다.

제3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제35조의2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한 처우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06.01.>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의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39조의2(징계시효) 교원의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를 따른다.

제39조의3(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국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복지비)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06.01.>

제41조 (삭 제)

제41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③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당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수당지급공고 : 임용권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지급 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2. 지급 심사결정 : 임용권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지급대상자 통지 :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학교장을 거쳐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3 (삭 제)

제 3 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41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의5(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단, 부장교사는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단,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4. 신규교원의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전문개정 2026.06.01.]

8. 삭제<2026.06.01.>

9. 삭제<2026.06.01.>

제41조의6(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2026.06.01.>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06.01.]

- 제41조의7(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1조의8(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본 정관 제40조의5(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06.01.]
 ②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06.01.]
 1.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신설 2026.06.01.>
 2. 재직 교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신설 2026.06.01.>
 3.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신설 2026.06.01.>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06.01.>

- 제41조의9(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 결과는 전자 문서로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1조의10(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11(운영계획)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42조 내지 제51조 (삭 제)

제 3 절 재심 위원회

제52조 내지 제65조 (삭 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66조(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67조(임용) ① 사무직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대우직원 선발,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말

하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공개전형의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삭 제)

제68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단,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은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적용한다.

제69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사무직원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③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제69조의3(사무직원 공로연수) ① 사립학교에서 20년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도래 잔여 기간 6개월 이내인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

② 정년퇴직일 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부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이 공로연수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

제69조의4(사무직원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69조의5(복지비) 사무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06.01.>

제70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 제70조의7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72조(법인의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의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 제73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수석교사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제74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②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의2(장학금)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06.01.>

제 3 절 중 학 교

- 제75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수석교사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제76조(하부조직)** ① 중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②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2(장학금)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06.01.>

제 4 절 정 원

제77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7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8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9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 일 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1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정관 제81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제82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8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규정의 제·개정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를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8.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9. 학교시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모니터링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제86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 ②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8조(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9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1조(회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원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

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안건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규정으로 정하거나,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9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9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7조 내지 제108조 (삭제)

제 10 장 보 칙

제109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제11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직명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소 |
|----|-----|-----------|----|-------------------------|
| 이사 | 김병연 | 1896.2.25 | 4년 |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429-1 |
| 이사 | 홍정모 | 1906.4.11 | 4년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33 |
| 이사 | 홍현설 | 1911.9.21 | 4년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17 |
| 이사 | 안창하 | 1905.7.15 | 2년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44-35 |
| 이사 | 사 월 | 1926.2.25 | 2년 | 서울시 서대문구 정동 34 |
| 이사 | 레이니 | | 2년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학구내 외인주택 |
| 이사 | 이봉구 | 1919.4.14 | 4년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116 |
| 감사 | 안석은 | 1906.1.23 | 2년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7-33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66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 ③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 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과 유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법인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정원에 관한 조치)

- ①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9급(부서기) 2인은 퇴직, 전보, 승진 등 기타 사유로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변경된 정원에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기능직 정원(수)을 고용원 정원(수)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현원이 정원 초과하는 기능직 9등급 1인은 퇴직으로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관한 경과 조치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
의 임기는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
원회위원 임기 개시일 전 일에 만료한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은 본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4조(임원의
임기)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및
제16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사 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
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결위되는 때
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제4조 (임원 선임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제2항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정관 제13조1의 사항은 2011년 4월 7일부터 이사 정수를 9인으로 적용 시행하고, 2011년 6월 19일부터 이사 정수를 8인으로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6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4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은 2014년 3월 1일자로 전환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능직의 직급과 호봉을 승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5조의1 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3조1의 사항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이사 정수를 9인으로 적용 시행한다.

제4조 (교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기 없이 임용된 교감의 임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3조 1호 및 제15조의3의 사항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이사 정수를 8인 및 개방이사 정수를 2인으로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4조의6, 제39조 1항의 4호, 제39조 5항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정관 제13조 1호 사항은 2016년 6월 28일부터 이사 정수를 7인으로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1호의 사항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사무조직 정원

| | |
|-------|-----|
| 총 계 | 10명 |
| 일반직 계 | 4명 |
| 5급 | 1명 |
| 6급 | 2명 |
| 9급 | 1명 |
| 기능직 계 | 4명 |
| 3등급 계 | 2명 |
| 운전기사 | 1명 |
| 건축기사 | 1명 |
| 6등급 계 | 2명 |
| 고용원 | 2명 |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 구 분 | 광성중학교 | | 광성고등학교 | | 계 | |
|-----|-------|----|--------|----|----|----|
| | 행정 | 시설 | 행정 | 시설 | 행정 | 시설 |
| 합계 | 3 | 2 | 5 | 3 | 8 | 5 |
| 5급 | . | . | 1 | . | 1 | . |
| 6급 | 1 | . | . | . | 1 | . |
| 7급 | . | . | 2 | 1 | 2 | 1 |
| 8급 | . | . | . | . | . | . |
| 9급 | 2 | 2 | 2 | 2 | 4 | 4 |

(별표 3)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 정년 잔여기간 | 산정기준 |
|--------------|---|
| 1년 이상 5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 5년 초과 10년 이내 | $\text{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times \left\{ 60 + \frac{(\text{정년 잔여월수} - 60\text{월})}{2} \right\}$ |
| 10년 초과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이내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비 고 :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본재산 목록(삭제)